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민선8기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 총괄

- 현행 : 1실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9면
- 변경 :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 나. 과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과 신설 : 새마을교통과, 안전과
- 과 명칭변경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총무과	→	자치행정과
미래지역활력과	→	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	→	관광과
민원봉사과	→	민원과
새마을복지과	→	산림축산과
건설안전과	→	건설과

#### 다. 분장사무 조정 주요내용 (안 제4조 및 제14조)

- 총무과	CCTV(관제)업무	→ 안전과
- 재무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신규)	
- 미래지역활력과	규제, 적극행정, 혁신업무 역세권개발 추진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신규)	→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가족지원과
- 환경과	클린성주업무	→ 새마을교통과
- 농정과	축산업무	→ 산림축산과
	축산방역업무	→ 산림축산과
- 기업경제과	교통행정업무	→ 새마을교통과
	교통지도업무	→ 새마을교통과
- 도시계획과	군발주 공공 건축물 공사감독 및 창의문화센터관리 업무(신규)	
- 허가과	장사업무	→ 가족지원과
	공장등록 업무	→ 기업경제과
	환경인허가 업무	→ 환경과
- 새마을복지과	새마을업무	→ 새마을교통과
- 건설안전과	재난,방재 업무	→ 안전과
	안전관리 업무	→ 안전과
	안전진단 업무	→ 안전과
- 안전과	중대재해업무(신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신규)	
-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업무	→ 문화예술과

라. 사업소 폐지 (안 제14조, 별표2)

- 사업소 폐지 : 문화예술회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미래지역활력과-5102(2022. 10. 7))
-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 마. 입법예고 : 2022. 10. 8. ~ 10. 27.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기업경제과,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통제
2. 군의회 지원
3.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4. 행정실적 평가업무
5. 통계 업무
6.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군정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8.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9. 법제·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0.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혁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 예산, 홍보, 감사에 관한 사항

②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의전·의식 및 행사,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2. 서무, 보안, 공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복무 지도 및 감독
4. 공무원 인사·교육 및 조직관리

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단속
6. 여론 및 동향 관리
7.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 지방분권·주민자치 등에 관한 업무
8. 학교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9. 공무원 단체·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10. 전산시스템·정보화 업무 및 행정·정보통신 관련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및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3.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의 계약·지출·결산
7.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8.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9. 공유 재산 관리
10. 청사 및 관사 관리
11.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미래전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역세권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민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3. 여권 및 외국인주민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거래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8.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민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관광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마케팅 기획 및 전략 수립
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4. 축제 종합 기획·운영
5.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축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⑦ 문화예술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종합 기획 및 관리
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3.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성주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4.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재 정책 업무 전반
5.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관리
6.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7. 그 밖에 문화예술·문화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⑧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2.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이재민 보호지원
3.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5.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
8. 의료급여에 관한업무
9.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10.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⑨ 가족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 장사 관련 업무
3.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4.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5.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 및 시행
6.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9.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10. 군민행복교육 기획·운영
11. 그 밖에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⑩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획
2. 자연생태, 국립공원관리
3. 야생동물 및 수렵관리 업무
4.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5.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6.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시설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관련 업무
8. 환경 인허가·환경성 검토 업무(환경영향평가 등)
9.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업무
10. 그 밖에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⑪ 농정과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행정 종합기획·조정
2. 친환경농업 육성,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재해 대책
4. 참외, 과수, 원예·특작 관련업무
5. 농산물 유통 지원 및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
6. 지역농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

7. 그 밖에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

⑫ 산림축산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 산림소득사업
2. 휴양림 및 야생화식물원 운영·관리
3.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4.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조경관리·조성에 관한 업무
6. 축산정책·지원 업무
7. 축산 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림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⑬ 기업경제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
2. 전기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3.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 관리
6. 그 밖에 지역경제, 에너지, 일자리, 기업, 공장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⑭ 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관리 업무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

6. 건축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7. 군발주 공공 건축물 공사 감독 및 창의문화센터 관리
8. 그 밖에 도시계획 및 지역·도시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⑮ 새마을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 업무 및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민운동 지원 및 바르게살기 운동 업무
3. 환경청결 운동 및 행락질서 종합 추진
4. 깨끗한 성주만들기 추진
5.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새마을, 클린성주, 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⑯ 허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토지분할 업무
2.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3.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사용승인 및 관리
5.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준공
6. 문화재 관련 허가 등 민원 처리
7. 도로, 구거, 하천 점용·허가
8.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9.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10. 공동주택 관리 업무
11. 건축물 관리점검 및 지도

⑰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2. 사회적 재난 대응
3. 민방위 관련 업무
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 지역내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진단
7. 자연재난 업무 및 재해 응급복구
8. 중대재해대응 업무

⑱ 건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및 국·공유재산 관리
2.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
3. 군도·농어촌도로, 교량 관리
4. 농업기반조성사업
5. 하천 종합관리
6. 소규모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관리
7. 그 밖에 건설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둔다.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육성
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5. 농촌여성 생활기술 개선 사업

6.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노인 생활지도
7.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9. 축산, 사료작물 시범사업 및 생균제 생산보급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2. 농약안전사용 지도
13.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기술 정보 확산
14. 토양검정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15. 참의생태학습원, 테마공원 운영·관리
16.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
17.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사업소

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 행정 종합 기획 및 법제 관리
- 나.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 다. 지하수 관리
- 라. 상·하수도 시설 관리
- 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업무
- 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
- 사. 하수도 사업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행
- 아.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
- 차. 배수설비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 카. 상수도 급수공사
- 타.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사업소

- 가. 체육업무 총괄 및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지원 업무
- 나.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 다. 체육시설 조성·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체육시설물의 프로그램 운영·개발
- 마.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바.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사업소

- 가. 청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나. 생활폐기물류 배출·수거 업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리

- 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 및 관리
- 마.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및 관리
- 바.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장 하부 행정기관(읍·면)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며,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로,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으로,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을 “위원회 총괄 관리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②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을 “지방보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③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④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합기금 담당”을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⑤ 「성주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예산 담당”을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⑥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7조 중 “예산 담당”을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⑦ 「성주군 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법무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감사담당”을 “법무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하고,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실과업무담당주사”를 “부서업무팀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 ⑧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감사업무담당주사”를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⑨ 「성주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의 “총무과장”

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⑩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의 “총괄부서의 담당”을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⑪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군 총무과장”을 “군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성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서의 담당”을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⑬ 「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원업무 담당”을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⑭ 「성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총괄부서의 담당주사”를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⑮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총무과장”을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교육지원담당”을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⑯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총무과장”을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7조제3항 중 “교육업무 담당”을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⑰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14조제4항 중 “공무원복지업무 담당”을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⑱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9조제4항 중 “교육

후생담당”을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⑲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11조제3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을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⑳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징수담당”을 “징수업무 담당 팀장, ”경리담당“을 ”경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㉑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을 “민원과장”, “새마을복지과장”을 “새마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징수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㉒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㉓ 「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㉔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무부서인 기획담당이 된다.”를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㉕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공유재산관리 부서장”, “농정과장”을 “농정업무 부서장”, “미래지역활력과장”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인지원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농촌개발담당”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㉖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㉗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㉘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㉙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재 소관업무 담당”을 “문화재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㉚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을 “고분군전시관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㉛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주관과장”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담당”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㉜ 「성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㉝ 「성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지명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㉞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1조1항 중 “지적경계결정업무담당”을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㉔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5항, 제10조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㉕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㉖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주민복지과장”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㉗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자활기금소관 부서장”을 “자활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자활기금소관담당”을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㉘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족지원과장”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㉙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을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㉚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여성아동담당(6급)”을 “여성업무 담당부서 팀장(6급)”으로 한다.

㉛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③ 「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상아동담당”을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④ 「성주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가족지원과장”을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⑤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아동업무 담당 주사”를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⑥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주사”를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⑦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다문화가족업무담당”을 “다문화가족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을 “다문화가족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④⑧ 「성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8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⑨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⑩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읍·면 산업담당”을 “읍·면 산업팀장”으로 한다.

⑤⑪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담당”을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담당부서 팀

장”으로 한다.

㉔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참외담당”을 “참외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㉕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을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㉖ 「성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교육청 학무과장”을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통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㉗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㉘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㉙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전거업무 담당 주사”를 “자전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㉚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2의제2항 중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제2제3항 중 “허가과”를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 “건축허가업무 담당”을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민원업무담당 주사”를 “당해 민원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㉛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0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건설안전업무담당주사”를 “건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1 「성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농촌용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촌개발담당”을 “농촌용수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2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도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도로관리업무 담당”을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3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4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5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6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관리담당”을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읍·면은 담당급”을 “읍·면은 팀장급”으로 한다.

⑥7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10조

- 제1항제2호 중 “건설안전담당”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제3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11조제5항 중 “건설안전과 하천방재담당”을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⑥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⑦ 「성주군 현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 중 “해당 업무 담당”을 “해당 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⑧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위생관리담당”을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새마을개발과장”을 “보건소장”, “식품위생담당”을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⑨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건강증진담당”을 “건강증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⑩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5항 중 “농업인육성담당 부서로” 을 “농업인육성업무 담당팀으로” 한다.
- 제4조 제3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 ⑪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귀농업무 담당주사”를 “귀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⑫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7(간사 등)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을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㉟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도행정담당”을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㊱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체육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

㊲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장”을 “군수”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관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주군 보 건 소	성주군 성주읍 성박숲길 12	성주군 일원
” 선남지소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66	선남면 일원
” 용암지소	성주군 용암면 상성로 14	용암면 일원
” 수륜지소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9-4	수륜면 일원
” 가천지소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	가천면 일원
” 금수지소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902	금수면 일원
” 대가지소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58	대가면 일원
” 벽진지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1길 7	벽진면 일원
” 초전지소	성주군 초전면 대고로 48	초전면 일원
” 월항지소	성주군 월항면 선월로 474	월항면 일원
선 남 면 도흥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276-10	도흥1,2,3리, 도성리, 용신1,2,3리, 소학1,2리
선 남 면 문방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문방3길 23-5	문방1,2,3리, 오도리
선 남 면 명포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본성로 499	명포1,2리, 장학리, 유서1,2리
용 암 면 마월보건진료소	성주군 용암면 마월1길 20	마월1,2리, 중거리, 계상리, 대봉1,2리
수 륜 면 남은보건진료소	성주군 수륜면 남작로 106	남은1,2리, 보월1,2리,작은리
금 수 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24	후평1,2리,봉두1,2리, 무학1,2리,영천리
대 가 면 용흥보건진료소	성주군 대가면 용흥3길 2	용흥1,2,3리, 흥산1,2리,옥성2리
벽 진 면 봉학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봉학1길 9-5	외기2,3리, 봉학1,2,3,4리, 용암1,2리
초 전 면 소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56	소성리, 월곡1,2리, 용봉1,2리
초 전 면 용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용성길 52-8	용성1,2,3리, 문덕2리,칠선1리
월 항 면 장산보건진료소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태실로 63	장산1,2리,수죽1,2리, 지방리,인촌1,2리,어산리

## [별표 2]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2조관련)

명 칭	위 치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성주군체육시설사업소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성주군 성주읍 삼산1길 266-3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  
우

4. 작성자 : 총무과 행정담당 황 영 미